

비상경제장관회의

23-13-4

(공개)

부담금 제도개선 방안

2023. 5. 17.

관계부처합동

부담금 제도개선 방안(요약)

- **(추진 배경)** 최근 인구구조 변화, 환경규제 강화 등 경제·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부담금 정비 필요

* '21년 말 기준, 90개 부담금 운용 규모는 21.4조원으로 GDP 대비 1% 수준

- 신설 이후 20년이 경과한 부담금이 74%(90개 중 67개)이며,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도 '02년 제정 이후 20년 경과

※ 부담금 평가, 민간 전문가 및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

- **(부담금 정비)**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(23개)

- 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, 불필요한 행정 부담도 경감(9개)

- 임대주택 활용 용도 소형주택에 학교용지부담금^{'95년} 부과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면제 대상을 확대(임대주택→60㎡ 이하 소형주택)
- 출국 방식에 따라 면제 대상이 달라(공항 2세, 항만 6세 미만) 형평성 문제가 있던 공항 출국납부금^{'97년} 면제 대상을 확대(2→6세 미만)
- 예치금·수수료 성격임에도 부담금으로 관리되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^{'05년},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^{'84년}은 관리대상 제외

- ② 부담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관리법에 부합토록 개별 부담금 법령도 정비(14개)

- 이의신청절차 마련, 부과요건 명확화, 가산금 부과규정 명문화
- 부담금관리법상 증가산금 요율 상한(일 0.025%) 대비 과도한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증가산금 요율 인하

③ 아울러 부담금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페널티 방식의 부담금 운용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

-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^{'91년}에 신규 채용 목적 장애인 훈련비용을 감면하는 '고용기여인정제' 신설

□ **(관리·운영체계 개선)** 사회·환경변화에 맞추어 부담금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 개정 착수

① 부담금 개념 및 유형 명확화, 신설 부담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권익 보호 강화

- 납부자를 특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던 부담금 개념에 “특정집단”을 추가하고 유형별(원인자·수익자·유도성) 부과 원칙 정립
- 부담금관리법 개정 없이 부과·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

② 엄격한 신설 심사, 재설계 및 통합·폐지 등 부담금 평가 강화,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등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역할 강화

- 부담금 신설 요청시 소관 부처가 사전에 부담금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
- 기존 부담금은 개별 존치 평가에 더해 부담금 목적과 부담 능력, 인센티브 구조 등을 고려한 부담금 재설계를 위한 심층평가 도입
- 존치 평가에 따라 사회·환경변화에 맞지 않아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부담금은 통합·폐지 검토

□ **(추진일정)** 부처별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

- 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(7월, 잠정)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II. 부담금 제도개선(안)	2
① 기존 부담금 정비	3
② 부담금 관리·운영체계 개선	8
III. 향후 추진계획	10

I. 추진 배경

- **(정의)** 부담금은 반대급부 없이*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(부담금관리법 §2)

* 수수료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, 사용료는 시설·재산 사용의 대가

- 설치목적 및 성격에 따라 원인자(물이용부담금 등 41개), 수익자(개발부담금 등 43개), 유도성(장애인고용 부담금 등 6개) 부담금으로 구성

- **(현황)** '02년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을 제정하여 기본 틀을 마련한 후 부담금운용평가단,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* 추진

* 최근 3년간 총 26개 과제 발굴 → '22.12월 기준 완료 9건, 추진 중 17건

- 부담금관리법 별표에 부담금을 열거*하고, 신설 심사를 통해 부담금 수** 통제 강화 → '23년 현재 90개로 안정화

* 부담금 신설시 개별법 개정과 함께 부담금관리법 별표 개정 필요(법 제3조)

** 부담금 수(개) : ('05) 102 → ('15) 94 → ('17) 89 → ('18~'22) 90

- '21년 말 기준, 부담금 운용 규모는 21.4조원으로 GDP 대비 약 1% 수준에서 안정적 유지 중(OECD 평균^{1.54%} 대비 낮은 수준)

- **(개선 필요성)** 최근 국민소득 증가, 산업 발전 등 경제·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부담금 정비 필요

- 신설 이후 20년이 경과한 부담금이 74%(90개 중 67개)으로, 인구구조 변화, 산업 발전에 따른 변화 미반영

- 부담금관리법도 제정 이후 20년이 경과됨에 따라 부담금 관련 현재 판례,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개정 검토

⇒ 최근 5년간 **부담금 평가, 민간 전문가 및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논의**를 통해 제기된 사항을 토대로 **제도개선 방안 마련**

Ⅱ. 부담금 제도개선(안)

비전	국민·기업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활력 뒷받침
기본 방향	◇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◇ 사회·환경변화에 맞추어 부담금 제도 고도화

목표	① 기존 부담금 정비 ② 부담금 관리·운영체계 개선 [※부담금관리법 개정]
----	---

추진 과제	① 부담금 조정	① 국민권의 보호 강화
	- 기업부담 경감 - 국민부담 경감 - 행정부담 경감 - 인센티브 제도 도입	- 부담금 개념 재정립 - 부담금 유형 명확화 - 신설 부담금 관리 강화
	② 개별 부담금 법령 보완	②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
	- 구제절차 강화 - 부과요건 명확화 - 부과근거 법제화 - 증가산금 합리화	- 위원회 인원 확대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- 부담금 평가 강화 - 부담금 관리정보체계 구축

1 기존 부담금 정비

-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에서 23개 부담금을 선정하여 개선 추진
 - 최근 5년간 국회·감사원, 부담금 평가 및 기업 건의 등을 통해 제도 정비 요구가 지속된 부담금과
 - 경제·사회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우선 고려

1 부담금 조정

[기업 부담 경감]

- 수입 대비 지출이 과소하거나,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한 부담금은 부과기준 재설정

[학교용지부담금]

- **(현황·문제점)**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, 대지조성사업자에게 부과('95년~, '21년 징수 4,477억원)
 - 임대주택(부담금 면제) 활용 용도로 의무 건설해야 하는 소형주택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*, '21년 수입(4,477억원) 대비 사업비 지출(2,705억원)이 61% 수준으로 과소
- * (서울행정법원 2021. 6. 4. 2020구합80639)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**의무적으로 건설하여 임대주택**으로 활용되도록 정하여진 **소형주택**에 대하여 **학교용지부담금**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
- **(개선방안)** 면제 대상 확대 우선 추진 ▶ **[학교용지법 개정]**
 - 면제 대상 확대 검토를 통해 법 개정안 마련(~'23년 상반기) : 임대주택 → 소형주택(60㎡ 이하) 추가
 - 부과요율 합리화를 위해 교육현장, 지자체 및 개발사업 시행자 등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개선과제 발굴(~'23년, 교육부)
- * 요율 인하, 지역별 차등 부과, 부과대상 세대 구분 등

【폐기물처분부담금】

- **(현황·문제점)**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·매립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에게 부과('18년~, '21년 징수 1,920억원)하고 있으나, 사업자가 영세하여 부담 가중
 - 매출액에 따른 감면요율 차등구간(10억원 미만, 10~120억원)이 과소
 - 생활폐기물(15원/kg)과 유사함에도 사업장에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*에는 높은 요율(25원/kg)을 적용
- * 사업장 내 사업 활동 외에 직원 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
- **(개선방안)** 매출액에 따른 감면 요율을 세분화(2→6단계)하고,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

▶ [\[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\]](#)

【국민 부담 경감】

- 부담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부과 원칙·특성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형평성 제고

【출국납부금^(문체부·외교부)】

- **(현황·문제점)**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
 - * (문체부, '97년~) 공항(1만원), 항만(1천원), '19년 징수 4,006억원, '21년 징수 134억원 (외교부, '17년~) 공항(1천원), '19년 징수 410억원, '21년 징수 13억원
 - 납부금 면제 대상에 있어 항공은 2세, 선박은 6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
- **(개선방안)** 면제 대상 확대

▶ [\[관광기금법·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개정\]](#)

- 항공사(부과·징수 위탁자) 수수료율(現 5.5%*) 인하와 연계하여, 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: 2 → 6세 미만

* 인천공항공사(공사 0.5%, 항공사 5.0%), 한국공항공사(공사 1.0%, 항공사 4.5%)

** 기재부, 문체부, 외교부,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추진

[행정 부담 경감]

- ①예치금·수수료·협회비 성격은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,
②부과대상·목적이 같은 부담금은 통합함으로써 부담금운용
종합계획서·보고서 작성 등 각종 행정부담 경감

[1] 관리대상 제외

▶ [부담금관리법 별표 개정]

[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]

- **(현황)**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 원상회복을 위해 폐광산의 광업권자 등
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('05년~, '21년 징수 광해 38, 산림 10억원)
→ 광해방지사업 부담금*과 산림복구사업 부담금**으로 구성

* 광해방지사업 총 사업비의 자부담율(20~40%) 부과

** 산림청에서 매년 통지하는 복구비 예치액 통지액에 광종별로 30~60% 부과

- **(개선방안)** 예치금 성격*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관리대상에서
제외(부담금 성격의 광해방지사업 부담금은 존치)

* 광해방지의무자가 폐광 시 자발적으로 산림복구를 한 경우 해당 부담금 반환 등
사유 발생시 활용되는 예치금('22년말 기준 561억원 예치)

[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]

- **(현황)**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에게
신규 전기시설 설치공사비로 부과('84년~, '21년 징수 0.01억원)
- **(개선방안)** 서비스 제공 대가의 수수료 성격으로 관리대상에서 제외

[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]

- **(현황)** 협회에 가입된 손해보험회사들의 순보험료를 기준으로
산정된 협회비를 각 보험회사에 분담('73년~, '21년 징수 160억원)
- **(개선방안)** 각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발적 협의(이사회 의결)에 따라
협회비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리대상에서 제외

[2] 부담금 통합

【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·회수부과금】

- **(현황)**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·회수 촉진을 위해 재활용·회수 의무를 미이행한 제조·수입·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부과
 - 재활용부과금('07년~, '21년 징수 46억원)은 제조·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재활용의무 미이행량에 대해 부과
 - 회수부과금('12년~, '21년 징수 5억원)은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회수의무 미이행량에 대해 부과
- **(개선방안)** 부과대상(전기·전자제품) 및 목적(회수도 재활용과 같은 목적)이 동일하므로 부담금 통합 관리(통합 운영·징수)

▶ [\[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, 부담금관리법 별표 개정\]](#)

[인센티브 제도 도입]

- 사회적 책임노력 반영 등 부담금의 운용목적*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존 페널티 방식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도입

* 특정 공익사업 관련, 경제주체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도

【장애인고용 부담금】

- **(현황·문제점)** 장애인 의무고용률(민간 3.1%, 공공 3.6%)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 부과('91년~, '21년 징수 7,676억원)
 -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부담금 외에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에 대한 유인 설계 미흡
- * 고용률('20→'21) : (민간) 2.91→2.89%(△0.02%p) / (공공) 3.68→3.81%(+0.13%p)
- **(개선방안)** 기업이 채용 전제로 자체훈련시설 활용 또는 훈련과정을 개발해 장애인 훈련시 부담금을 감면하는 '고용기여인정제' 신설 검토

▶ [\[장애인고용법 개정\]](#)

2

개별 부담금 법령 보완

- 이의신청절차 법령근거 마련, 부과요건 명확화, 가산금 부과규정 명문화, 증가산금 요율 인하 등 부담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별 부담금 법령 정비

- ① **(구제절차 강화)** 이의신청절차*가 없는 개별 부담금 근거 법령에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도록 개정 추진(11개 부담금**)

* 제5조의4(권리구제절차) 위법·부당한 부담금의 부과·징수로 권리·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.

** 국민건강증진부담금,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, 농산물가격안정기금납부금, 수입이익금(농·축·임산물 및 양곡), 국제교류기여금,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, 장애인고용부담금 등

▶ **[개별 부담금 근거 법령(11개) 개정]**

- ② **(부과요건 명확화)** 부과요건*이 불명확한 개별 부담금 근거 법령에 부과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 추진(5개 부담금**)

* 제4조(부담금의 부과요건등) 부담금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.

** 농산물가격안정기금납부금, 수입이익금(농·축·임산물 및 양곡)

▶ **[개별 부담금 근거 법령(5개) 개정]**

- ③ **(부과근거 법제화)** 가산금, 연체료 부과근거*가 사업자(지역난방공사 등) 내부규정에 있는 부담금의 부과규정을 상위법령에 명문화(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)

* 제5조의3(가산금 등)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▶ **[집단에너지법 개정]**

- ④ **(증가산금 합리화)** 개정된 부담금관리법*에 비해 증가산금이 과다한 부담금**의 증가산금 요율 인하

* (현행) 월 1.2% → (개정) 일 0.025%(월 0.75%), △62.5% ('22.6.16. 시행)

**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(1일당 0.03%), 특정물질 제조·수입부담금(1일당 0.05%)

▶ **[해운법·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]**

② 부담금 관리·운영체계 개선 → 부담금관리법 개정

1 국민권의 보호 강화

- ① **(개념 재정립)**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특정성이 없어 개념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음 → 부담금 정의에 “특정집단” 추가

* (헌재 판례, 98헌가1)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대하여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집단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조세외적 부담금

현 행	변경안 예시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부담금”이란 부가권자가 분담금, 부과금, 기여금,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의무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부담금”이란 부가권자가 분담금, 부과금, 기여금,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특정집단 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의무를 말한다.

- ② **(유형 명확화)** 원인자·수익자·유도성 부담금 등 3개 유형을 부담금관리법에 명시하고 유형별로 부과 원칙·기준 정립

- 원인자·수익자·유도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 금지, 관련 비용·수익, 경비 및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필요최소한 부과 등

구 분	내 용	예 시
원인자	■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사용자 또는 원인자에게서 관련 비용을 징수	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금, 물이용부담금 등
수익자	■ 공공사업 또는 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	개발부담금,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
유도성	■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목적에 유도	장애인 고용부담금, 배출부과금 등

- ③ **(신설 부담금 관리 강화)** 부담금관리법 별표 개정 전에는 신설된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없도록 부담금 관리조항 신설

* (제3조)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.
(신설) 부담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은 **부과징수할 수 없다.**

- ① **(부담금심의위원회 기능)**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위주로 운영되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인원*을 확대하여 심층적인 심의 추진

* 제9조(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)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3.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

- 환경, 국토교통, 산업·에너지, 문화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부담금 관리 강화
 -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임기(現 2년)를 부담금 평가 주기(現 3년)와 일치토록 조정하여 평가 내실화 추진
- ② **(부담금 평가 강화)** 부담금 신설은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, 기존 부담금은 재설계 및 통합·폐지 등 실효성 있는 정비 실시
- 부담금 신설 요청시 소관 부처가 사전에 부담금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
 - 기존 부담금은 개별 존치 평가에 더해 부담금 목적과 부담 능력, 인센티브 구조 등을 고려한 부담금 재설계를 위한 심층평가 도입
- * 국민·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따라 평가가 필요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대상(3년 주기)와 별도로 평가대상 추가 검토
- 존치 평가에 따라 사회·환경변화에 맞지 않아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부담금은 통합·폐지 검토

- ③ **(부담금 관리정보시스템 구축)** 통합적 부담금 관리체계를 뒷받침하고 대외에 체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

* 현재는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·보고서를 책자 형태로 국회에 제출(5월말), 열린재정에 업로드 및 디브레인 시스템에 등록('22년~)하는 등 활용성 미흡

- 부담금 실태조사를 통해 부담금으로 포함·관리해야 할 신규 부담금을 발굴하고,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정비도 추진

Ⅲ. 향후 추진계획

- **(추진일정)** 부담금 정비방안 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
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상정·보고(7월(잠정), 부처)
 - **(향후계획)** 추진상황 점검 및 부담금관리법 개정 연구용역 추진
 - ①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 방안 도출(7~12월)
 - ② 부담금관리법 개정* 연구용역 추진(5~11월)
- * 부담금 개념 재정립 및 유형 명확화,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확대,
부담금 평가 강화, 부담금 신설시 심사기능 강화 등

참 고

부담금 운용 현황

- ① **(정의)** 반대급부 없이(사용료·수수료와 차이*)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(부담금관리법 제2조)

* 사용료는 시설·재산 사용의 대가, 수수료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

- 엄격한 관리를 위해 「부담금관리법」 별표에 부담금을 열거

* 부담금 신설 시 개별법 개정과 함께 부담금관리법 별표 개정 필요

- ② **(현황)** '21년말 기준, 18개 부처, 90개 부담금(규모: 21.4조원)

- 분야별로 금융 25.4%, 산업·에너지 22.2%, 환경 분야 13.0% 등

주요 분야별 부담금 징수현황

구분	금융	산업·에너지	보건의료	환경	국토교통	기타	합계
금액(억원)	54,450	47,479	29,676	27,845	14,487	40,412	214,349
개수(개)	11	9	2	20	15	33	90
(금액/개수, %)	25.4/12.2	22.2/10.0	13.8/2.2	13.0/22.2	6.8/16.7	18.9/36.7	100/100

- ③ **(운용)** 부담금 수입 대다수는 재정수입(기금 및 특별회계)으로 귀속

- 전체 부담금의 85.4%(18.3조원)는 기금·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에 나머지(3.1조원)는 지자체·공공기관 사업 등에 사용

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내역

구분	중앙정부		지방자치단체		공공기관 등 기타(11개)	계
	기금(33개)	특별회계(5개)	광역(11개)	기초(9개)		
금액(억원)	151,017(43개)	31,981(23개)	12,293(11개)	12,103(11개)	6,955(13개)	214,349
비중(%)	70.5	14.9	5.7	5.6	3.2	100.0

- ④ **(도입년도)** '00년대 이전 도입된 부담금이 62.2%(56개) 차지

부담금의 도입연도 현황

구분	~'60년대	'70년대	'80년대	'90년대	'00년대	'10년대	계
개수	2	6	16	32	28	6	90
비중(%)	2.2	6.7	17.8	35.6	31.1	6.7	100

- ⑤ **(정비현황)** '01년 이후 100여개 운영하였으나, '10년 94개(신설 3, 폐지 8개), '18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설 후 현재까지 90개로 안정적 운영

부담금의 정비 현황

구분	'01	'02	'03	'04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	'16	'17	'18	'19	'20	'21
계	101	102	100	102	102	100	102	101	99	94	97	97	96	95	94	90	89	90	90	90	90
증	12	2	6	2	1	5	7	1	-	3	3	2	-	-	-	1	-	1	-	-	-
감	△9	△1	△8	-	△1	△7	△5	△2	△2	△8	-	△2	△1	△1	△1	△4	△1	-	-	-	-